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

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- 1. 납 세 자 : *****
- 2. 부과취소사유 : 사업장 안분착오(연면적 동일, 종업원수 변경)
- 3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 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4	5,863,547,660	581,979,730	5,281,567,93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(경정)결정서 1부.
 2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수납내역 및 환급내역 요약 1부.
 4. 연도별자치단체 환급(납부)내역 1부.
 5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안분자료(수정전후) 1부.
 6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안분자료(건축물연면적) 1부.
 7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안분자료(종업원) 1부.
 8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환급청구서 1부. 끝.

주무관 **박미연** 지방소득세 1팀 **이덕배** 세입관리팀장 대결 05/18 기획경제국장 전결
장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17189 () 접수 ()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715 /전송 02-3423-8834 / ppetti78@gangnam.go.kr / 부분공개